#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 9133 제안연월일: 2025. 3.

제 안 자: 법제사법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연번	의안 번호	대표발의자 (제출자)	발의일 (제출일)	심사 경과	
1	4499	송석준의원 등 12인	2024.10.02.	상정	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2차 전체회의(2024.11.04.)
				소위 심사	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(2025.02.17.) 제42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(2025.03.19.)
2	5438	박준태의원 등 10인	2024.11.11.	상정	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(2024.11.25.)
				소위 심사	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(2025.02.17.) 제42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(2025.03.19.)

제42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5. 3. 19)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 위 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
제423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(2025. 3. 19.)는 법안심

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#### 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흥기를 소지하고 도로나 공원 등을 배회할 경우 사회 일반에 공포심을 주고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을 통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.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·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,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흥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16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#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6조의3(공공장소 흉기소지)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·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,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16조의3(공공장소 흉기소지)
	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・공원
	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
	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
	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, 신체
	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
	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
	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
	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
	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
	<u>다.</u>